

충청북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 
조례안

---

# 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손윤목

# 충청북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6년 4월 18일 연철흠 의원 등 7명이 발의하여 2016년 4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2. 제정이유

-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방식으로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도민 상호간에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도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의 도정참여를 돕기 위해 주요 소셜미디어에 기관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(안 제3조)
-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, 이용자에게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·관리(안 제5조)
- 충청북도 누리소통망(SNS)서포터즈의 위촉과 활동내용행·재정적 지원(안 제7조)
- 도지사는 소셜미디어를 운영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함(안 제9조)

#### 4. 검토의견

- 이번 제정조례안은 도정에 대하여 도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하기 위하여 블로그, 트위터, 페이스북,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 운영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소셜미디어 관련 타시도 현황을 보면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12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임.
- 현재 충청북도 누리소통망 서포터스는 블로거 30명, 일반SNS 40명, 대학생SNS 30명 총 100명으로 구성하여 도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도정소식, 행사, 축제 등의 공유·전파, 충북의 숨은 맛과 멋 발굴·전파, SNS서포터즈의 온라인 콘텐츠 제작 참여 및 취재 활동 등의 역할을 하고 있음.
- 이 조례안은 공보행정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자발적인 도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

붙임: 충청북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1부. 끝.